

특정감사

# 2017년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17.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2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 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집행지침 등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 범위 및 감사 중점 사항

이번 감사는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로 감사 청구된 3개 보조사업자인 민간예술단체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3. 감사 기간 및 인원

2017. 9. 26(화)부터 같은 해 10. 10(화)까지 감사인원 2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감사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7. 10. 1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였다.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 특정감사 총괄<처분요구사항>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 요구사항	관계부서
1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 시 정

제 목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순회사업부, 문학지원부, 공연지원부  
 내 용

○○○(대표 ○○○, 강원도 춘천시 ???, 이하 ‘○○○’ 라고 한다), □□□(대표 ◇◇◇, 강원도 춘천시 ???), 극단 ◆◆(대표 ◇◇◇, 강원도 춘천시 ???)는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표 1] 과 같이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표 1] 보조금 교부 내역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명	보조금 지급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부서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장애인시설순회(총15회)	78,000,000원 (520만원x15회)	순회사업부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문학순회(총5회)	30,000,000원 (600만원x5회)	문학지원부
극단◆◆ (대표 ◇◇◇)	2017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 ㉿㉿㉿ 초청공연	19,000,000원	공연지원부

▲▲▲, ■■■, ●●●(이하 ‘제보자들’ 이라고 한다)은 ○○○(대표 ○○○)와 □□□(대표 ◇◇◇)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각 추진한 ‘장애인시설순회’사업에 지도교사로, ‘문학순회’사업에 홍보, 진행 등 스태프로 참여하였으나 해당되는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순회사업부에 제보(2017.8.24.)하였다.

○○○(대표 ○○○), □□□(대표 ◇◇◇), 극단◆◆(대표 ◇◇◇)는 동일한 주소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극단(대표 △△△, 부대표 ○○○, 강원도 춘천시

???)에서 공지한 채용모집공고를 보고 채용된 위 제보자들을 [표 2] 와 같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시켰다.

\* ◆◆◆극단(대표 △△△, 부대표 ○○○)은 2017년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6백만원 및 꿈다락토요문화학교사업으로 24백만원 선정

[표 2] 제보자별 보조금 사업 참여 내역

제보자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명	보조사업 참여시 역할 (보조금 집행 내역)	참여실적 (9월 말 현재)
▲▲▲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장애인시설순회(총15회)	지도교사 (회당 사례비 지급)	10회 참여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문학순회(총5회)	스태프 (회당 사례비 지급)	5회 참여
	극단◆◆ (대표 ◇◇◇)	2017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 ㉿㉿㉿ 초청공연	배우 겸 스태프 (사례비 지급 없음)	참여
■ ■ ■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장애인시설순회(총15회)	지도교사 (회당 사례비 지급)	10회 참여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문학순회(총5회)	스태프 (회당 사례비 지급)	5회 참여
	극단◆◆ (대표 ◇◇◇)	2017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 ㉿㉿㉿ 초청공연	배우 겸 스태프 (사례비 지급 없음)	참여
● ● ●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장애인시설순회	지도교사 (회당 사례비 지급)	10회 참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 관리 규정」 제39조(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7 신나는 예술여행(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대외용 사업명칭) 운영매뉴얼」에는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며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을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표 ○○○)와 □□□(대표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와 문학지원부에 각각 제출한 교부신청서에는 사업 참여 역할 및 횟수에 따라 회당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 ■■■, ●●●에 대하여 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사례비가 아닌 인건비 즉 월급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미리 인건비를 지급하고 차후에 보조금을 받아 대체하고 있었다. ( [표 3] 참고)

[표 3] ○○○ 및 □□□ 보조금 교부 내역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명	제출된 교부신청서 소요예산			보조금 교부일/지급 보조금 (천원)	인건비 사전 지급	9월 말 현재 진행된 사업 횟수
		항목	산출근거	지출금액 (천원)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장애인시설순회 (총15회)	사례비 (출연료)	사례비(3시간 기준) 지도교사 (7명x386,800원/숙식비포함) x15회	40,614	'17.3.30/46,800 2차 '17.6.7/31,200	'17.1월 부터 지급	11회 완료 (4회 남음)
		원천세	지도교사 (7명x13,200원x15회)	1,386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문학순회 (총5회)	사례비 (스태프 출연료)	스태프(3명) 사례비 250,000원 (원천세, 숙식비 포함) x3인x5회	3,750	'17.4.6/30,000	'17.1월 부터 지급	5회 완료

○○○(대표 ○○○), □□□(대표 ◇◇◇), 극단◆◆◆(대표 ◇◇◇), ◆◆◆극단(대표 △△△, 부대표 ○○○) 등 4개 단체 대표들은 2017년 초에 발표되는 보조사업 선정 내역 및 보조금을 고려하여 위 제보자들을 각 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시킨 후 ◆◆◆극단(대표 △△△, 부대표 ○○○)이 위 4개 단체를 대표해서

보조금으로 위 제보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집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 ■■■, ●●● 명의의 통장을 각각 개설한 후 통장(비밀번호 포함)과 도장<sup>1)</sup>을 □□□ 및 극단◆◆의 대표인 ◇◇◇가 보관<sup>2)</sup>하고, 위 4개 단체에서 보조사업 및 참여 횟수에 따라 해당 사례비를 위 제보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지급한 후, 실제로는 ◇◇◇ 대표가 출금을 임의로 하면서, 위 제보자들에게는 현금<sup>3)</sup>으로 월급<sup>4)</sup>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제보자들과 위 4개 단체 대표 3인의 주장이 상이하고 월급에 해당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명확한 문서 없이, 현재 공연출연계약서(장애인 시설순회 및 문학순회에 관한 공연일정, 사례비 등 포함)<sup>5)</sup>만 있는 상황에서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 위 제보자들의 주장 역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sup>6)</sup>을 고려하면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는 근거 또한 부족하다.

- 
- 1) ●●●은 도장을 ◇◇◇가 만들었고 ▲▲▲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 ○○○·◇◇◇·△△△는 ▲▲▲, ●●●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2) ▲▲▲, ●●●은 월급 통장으로 생각했고 ◇◇◇가 보관한다며 통장개설 당시 가져갔고 그 후 통장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 이를 묵살, 제보 후 통장을 돌려받았다고('17.9.3.) 주장, ○○○·◇◇◇·△△△는 행정절차의 편의상 필요해서 ▲▲▲, ●●●의 동의를 얻어 ◇◇◇가 가지고 있었고 ▲▲▲, ●●●이 한번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으며 통장을 달라고 해서 돌려줬다고('17.9.3.) 주장
  - 3) ▲▲▲, ●●●은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는 월급이 들어오면 학자금 대출 상황을 해야 하니 ▲▲▲, ●●●이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4) ▲▲▲, ●●●은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는 건지 알지 못했으며, ○○○·◇◇◇·△△△는 보조금 사례비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 순회사업 사례비는 숙식비가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 ●●●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5) ▲▲▲, ●●●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공연출연계약서(장애인시설순회, 문학순회) 역시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고 서명했다고 주장, ○○○·◇◇◇·△△△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당사자들이 도장을 찍고 서명했다고 주장.
  - 6) ▲▲▲(17.1월-8월 근무)는 교부신청서에 의하면 총 5,076,750원(386,800x10회+241,750x5회) 지급, 실제 월급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음. ●●●(17.3월-5월 근무)의 경우 교부신청서에 의하면 총 3,868,000원(386,800x10회) 지급, 실제 월급으로 1,700,000원 지급받음. 그 후 ○○○·◇◇◇·△△△는 9월 19일에 ▲▲▲, ■■■, ●●●에게 각각 386,800원씩 지급, 9월 29일에 ●●●에게 1,481,000원을 지급함.

「2017 신나는 예술여행 운영매뉴얼」의 보조금 집행안내에서는 음향, 조명 등 장비 소품 등 임차료 집행에 대해서 ‘극단 간, 출연진(참여자)와 관련된 업체 등 거래 불인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 대표 ○○○는 ‘장애인시설순회’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 ◇◇◇)에서 차량 및 조명임차를 하고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역시 ◇◇◇가 대표로 있는 ‘●●●’에 홍보물과 미술재료 비용을 지급하고 관련해서 사유서를 순회사업부로 제출하였다. ( [표 5] 참고)

[표 5] ‘●●●’ 장애인시설순회 교부신청서 소요예산 및 실제 거래처

교부신청서 소요 예산			실제 거래처
항목	산출근거	지출금액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리플렛 인쇄비 (30만원x15회) 배너, 현수막 (배너 3만원 + 현수막 7만원)x15회	6,000,000원	●●● (대표 ◇◇◇)
재료	만들기 재료 등 7,500원x1,200명 기준	9,000,000원	
임차료	차량 임차료 (50만원/유류비포함x2대)x15회	15,000,000원	□□□ (대표 ◇◇◇)
임차료	조명 임차료 (핀 조명 등 40만원)x15회	6,000,000원	

○○○ 대표는 춘천시에서 조명 임차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거의 없고 임차가격도 저렴한 □□□(대표 ◇◇◇)에서 조명 임차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과 홍보물 인쇄 거래를 한 이유 역시 인쇄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배너 등)은 공통된 디자인 양식을 순회사업부에서 제공하고 있어 인쇄기기가 없는 ●●●(대표 ◇◇◇)의 역할이란 인쇄업체를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다.

참고로 극단◆◆(대표 ◇◇◇) 및 □□□(대표 ◇◇◇)는 보조금으로 집행한 홍보 인쇄물 제작을 각각 ㉠㉠인쇄와 ■■■기획과 거래했다. 동일한 사무실을 사

용하며 함께 여러 보조사업을 추진한 내용( [표 6] 참고)을 고려하면 인쇄업체 정보를 ○○○ 대표가 몰라서 ●●●에 인쇄를 맡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표 ○○○), □□□ 및 극단 ◆◆(대표 ◇◇◇) , ●●●(대표 ◇◇◇)간의 거래는 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2017 신나는 예술여행 운영매뉴얼」의 보조금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표 6] 보조사업 참여 내역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명	○○○, ◇◇◇, △△△ 참여 내역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장애인시설순회(총15회)	- △△△가 지도교사로 참여 - ◇◇◇가 대표로 있는 ●●●로 인쇄 및 미술재료비 지급 - ◇◇◇가 대표로 있는 □□□로 조명 및 차량 임차
□□□ (대표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문학순회(총5회)	- ○○○가 배우로 참여 - △△△가 배우로 참여
극단◆◆ (대표 ◇◇◇)	2017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 ㉮㉮㉮ 초청공연	- ○○○가 배우로 참여 - △△△가 연출로 참여

### 조치할 사항

#### [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대표 ○○○)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 관리 규정」 제39조(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라 20,800,000원(5,200,000원×사업 잔여 횟수4회)을 회수 조치하고 사무처는 ●●●(대표 ○○○), □□□ 및 극단◆◆(대표 ◇◇◇)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